

의안번호	제 902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25년 4월 11일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안

의안 번호	902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5년 4월 11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「재해구호법」에 따른 재해구호기금(법정)이 기존 「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에 따라 사회복지기금(비법정)에 포함 운영되고 있어, 특성과 목적에 맞도록 분리하여 조례 제정 필요
- 재해구호사업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호활동 지원 및 재해구호기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기금의 조성(안 제2조)
- 기금의 용도(안 제3조)
- 기금의 관리·운용(안 제4조)
-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안 제5조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해당없음

5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붙임

충청북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,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적립된 충청북도 재해구호기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금의 조성) 충청북도 재해구호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.

1. 「재해구호법」 제15조에 따른 적립금
2. 기금의 운용 수익금
3. 그 밖의 수입금

제3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재해구호법 시행령」 제8조에 따른 사업 지원
2. 다른 시·도 재해 발생 시 구호에 필요한 금품 지원

제4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설치하고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한다.

② 기금의 출납은 「충청북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을 준용한다.

제5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3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하되,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가 대행한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2.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
3.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
4.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6조(기금관리 공무원)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.

1. 기금운용관: 재해구호업무 담당 국장
2. 분임기금운용관: 재해구호업무 담당 과장
3. 기금출납원: 재해구호업무 담당 팀장

제7조(운용계획과 결산 보고) ①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련법령 발췌

□ 재해구호법

제14조(재해구호기금의 적립 등) ① 시·도지사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구호비용을 부담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.

② 재해구호기금은 이재민의 구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

③ 재해구호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5조(재해구호기금의 최저적립액)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기금의 매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「지방세기본법」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 다만, 특별시의 경우에는 1천분의 2.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

②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적립된 재해구호기금의 누적집행잔액이 최근 3년 동안의 「지방세기본법」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1천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의 최저적립액 이하로 적립할 수 있다.

□ 재해구호법 시행령

제8조(재해구호기금의 용도)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해구호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법 제4조제1항제1호·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구호의 제공
2.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물자의 구입 및 보관창고의 설치·운영
3. 법 제7조에 따른 응급구호
4. 법 제9조제3항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상
5. 법 제16조의3에 따른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 지원

6. 「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액의 사전 집행
 7. 재해구호물자의 조달·운송
 8. 재해구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등 구호 관계인에 대한 재해구호 교육·훈련 및 급식
 9. 그 밖에 시·도지사가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
- ② 시·도지사가 제1항제6호에 따라 재해구호기금을 재난지원금으로 사전 집행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금액을 「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별표 1 및 별표 3의 비고 제1호의 재난지원금 부담률에 따라 보전(補填)한다.

제9조(재해구호기금의 운영·관리) ① 시·도지사는 재해구호기금 적립계좌를 별도로 개설하고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.

② 재해구호기금의 운영·관리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13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 하여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1.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
2.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

3.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충청북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목적: 재해발생에 따른 구호활동을 지원하여 이재민 등의 조기 생활안정 도모
- 사업위치 : 충북 11개 시·군
- 사업내용
 - (예방) 재해구호물자 구입, 구호관계인 훈련 등
 - (구호) 임시주거시설 제공, 장사지원, 심리회복지원 등
 - (기타) 도지사가 인정하는 재해구호 사업(폭염·한파 피해 예방, 소상공인 지원 등)

2. 비용 발생 요인

- 재해구호 예비 사업, 재난 발생 시 구호지원사업

3. 관련조문

- 안 제3조(기금의 용도)
 - 「재해구호법 시행령」제8조에 따른 지원
 - 타 시·도 재해 발생 시 구호에 필요한 금품 지원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세입 : 2025년도 수입 예상내역을 기준으로 작성
- 세출 : 2025년도 재해구호 지원사업비 편성 내역을 기준으로 작성
- 법정적립액 :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 보통세입 결산액 연평균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* 재해구호법 제15조에 근거 매년 적립
- 산출근거
 - 재해구호물자 구입 : 155천원 × 900세트 = 139,500천원
 -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교육 : 100천원 × 300명 = 30,000천원
 - 재해구호장비 유지비 : 30천원 × 12개월 = 360천원
 - 포괄적 재해구호비(법정적립액의 10%) : 7,933,434천원 × 0.1 = 793,344천원
 - 폭염 및 한파 피해 예방대책 추진 : 260,000천원

나. 추계 결과

- 기금운용 수익금 범위 내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됨

다. 재원조달방안 : 재해구호기금(도비)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 : 붙임

6. 작성자 :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장 홍지연

〈 연도별 비용 추계표 〉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25년)	2차년도 (2026년)	3차년도 (2027년)	4차년도 (2028년)	5차년도 (2029년)	합계
세 입		9,169,234	9,169,234	9,169,234	9,169,234	9,169,234	45,846,170
	이자수입	1,235,800	1,235,800	1,235,800	1,235,800	1,235,800	6,179,000
	전입금(법정적립액)	7,933,434	7,933,434	7,933,434	7,933,434	7,933,434	39,667,170
세 출		1,223,204	1,223,204	1,223,204	1,223,204	1,223,204	6,116,020
	이재민 재해구호 지원 사업	1,223,204	1,223,204	1,223,204	1,223,204	1,223,204	6,116,020
재원 조달		1,223,204	1,223,204	1,223,204	1,223,204	1,223,204	6,116,020
	기 금	1,223,204	1,223,204	1,223,204	1,223,204	1,223,204	6,116,020